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
제정 2019.03.12

1. 목적

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용어의 정의

- 1) 협력업체: 회사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회사와 제조, 용역 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업체를 의미한다
- 2) 우수협력업체 : : 협력업체 중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업체로 인증된 업체로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를 의미한다.
- 3) 잠재업체 : 회사와 거래는 하고 있지 않으나 신규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등록된 거래희망 업체를 의미한다
- 4) 등록업체 : 잠재업체 중 회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규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
- 5) 협력업체 선정 :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6) 협력업체 운용 :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.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 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3. 협력업체 선정,운용 실천사항의 운영

- 1.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 - 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 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 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웹사이트) 등에 15 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 - 나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 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e-mail 대체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- 다.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업체등록 평가항목 및 배점
 - 가. 아래의 내용을 평가항목/배점으로 산정하되 각 BG 의 실정에 따라 평가항목/배점을 조정한다

.품질(25점): 인증서 보유현황,기술자 보유현황,신기술보유현황,산재현황

.재무(25점): 현금흐름등급,부채비율,신용등급

.경영능력(25 점): 근로자수,Top 10 거래비율,대외수상실적

.역량(25점): 공장소유여부,설비보유현황

- 4.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한다.
 - 가. 협력업체로 선정.등록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거나,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.
- 5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을 구현한다.
 - 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- 6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.
 - 가.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.
- 7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- 가. 등록취소 기준
 - 부도, 폐업, 면허취소 또는 파산업체
 -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유발 업체
 -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
 - 중대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.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
 - 유사 동종업체를 선동하여 담합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 - 어음, 수표 등이 거래정지 된 경우
 -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,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 개시 신청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
 - 거래품목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
 - 법규위반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사례 등 하도급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
 - 나.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고, 해당 사업자 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8.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.

이 실천사항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첨부. 협력업체 등록절차]

